

함평군 2024회계연도

# 결산검사의견서

함평군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결산검사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25. 4. 7. ~ 4. 26. / 20일간

○ 검사위원

- 대 표 : 정현웅 (現군의원)
- 검사위원 : 이정화 (現교수)
- 검사위원 : 최대현 (前공무원)
- 검사위원 : 윤영선 (前공무원)



# || 목 차 ||

## I. 결산검사 결과

1. 결산검사기간	1
2. 결산검사위원	1
3. 결산검사진행	1

## II. 결산검사 총괄 현황

1. 함평군 재정의 개황	2
2. 세입·세출 결산	
가. 총    괄	4
나. 일반회계(세입·세출)	5
다. 특별회계(세입·세출)	11
라.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15
3. 기금의 결산	16
4. 재무제표 결산	18
5. 성과보고서	20
6.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	
가. 채    권	21
나. 채    무	21
다. 공유재산	22
라. 물    품	22

### Ⅲ.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1. 초과세입이 과다하므로 적정 세입예산을 편성하도록 함	23
2.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 필요함	25
3.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 편성 철저	27
4.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예산반영 철저	29
5.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의 일반예비비로의 통계목변경은 관련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30
6. 일반예비비의 지출은 관련 법규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32
7. 완성에 수년을 요(要)하며 중단없이 이행하는 사업은 계속비로 운영하도록 함	34
8. 특별회계의 집행율이 저조하므로 집행율 제고방안을 수립하도록 함	37
9. 특별회계 체계적 관리 필요	39
10.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관리 철저	40
11. 지방보조금 집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감축방안을 수립하도록 함	41
12.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예산총칙에 규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44
13.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의 개별(個別) 특별회계 운영 필요	46
14. 정책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을 제고 방안을 수립하도록 함	48
15. 기금관리의 운용혁신 필요	50

## IV.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또는 향상된 사항

1. 세출예산 이월액 최소화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를 위한 진력 ... 52
2. 건강드림 건강버스 확대, 행복버스 운영(보건소) ..... 53

## V.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처리사항

1. 순세계잉여금 지속적 관리 요망(기획예산실) ..... 54
2. 일반회계 전용예산 최소화(기획예산실, 해당부서) ..... 55
3. 예산편성 부적정(해당부서) ..... 56
4. 세입예산 편성 소홀(기획예산실, 재무과) ..... 57
5. 기금운용 사용실적 저조(해당부서) ..... 58
6. 이월사업비 집행 철저(해당부서) ..... 59
7. 예산편성 후 집행액 0원인 사업 추진 철저(해당부서) ..... 60
8.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미흡(기획예산실,재무과) ..... 61



# I. 결산검사 결과

1. 결산검사기간 : 2025. 4. 7. ~ 4. 26. (20일간)

## 2. 결산검사위원

직 위	성 명	검 사 분 야
대표위원	정 현 응	○ 세입·세출결산 전반 ○ 기금에 대한 전반 ○ 채권·채무 등에 관한 사항
위 원	이 정 화	○ 세입·세출결산 전반 ○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 각종 보조금에 관한 사항 ○ 세입예산에 대한 추이 등
위 원	최 대 현	○ 세입·세출결산 전반 ○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 지방세, 공유재산, 물품에 관한 사항 ○ 성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등
위 원	윤 영 선	○ 세입·세출결산 전반 ○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 기금에 관한 사항 ○ 성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등

## 3. 결산검사 진행

가. 세입·세출 전반에 관한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적부 검사

나. 지방세, 교부세, 세외수입 등 전반에 관한 사항 적법여부 검사

다. 일반·특별회계, 기금 등에 대한 예산운영실태 전반 검사

라. 결산 검사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필요시 관계 공무원에게 추가 자료 요구 및 확인

## Ⅱ. 결산검사 총괄 현황

### 1. 함평군 재정의 개황

가.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기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

(단위 : 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 계	세입(수입)	553,980,970,408	577,569,563,396	698,033,571,796	740,926,610,602	720,601,999,827
	세출(지출)	468,667,557,377	468,950,899,386	572,094,888,248	570,439,066,566	574,378,512,624
	결산상잉여금	85,313,413,031	108,618,664,010	125,938,683,548	170,487,544,036	146,223,487,203
일반회계	세입	527,781,585,987	554,747,395,422	682,066,530,242	719,013,746,782	694,069,694,866
	세출	450,259,623,950	451,098,746,286	560,819,926,578	560,404,980,846	557,306,269,744
	결산상잉여금	77,521,962,037	103,648,649,136	121,246,603,664	158,608,765,936	136,763,425,122
특별회계	세입	26,199,384,421	22,822,167,974	15,967,041,554	21,912,863,820	26,532,304,961
	세출	18,407,933,427	17,852,153,100	11,274,961,670	10,034,085,720	17,072,242,880
	결산상잉여금	7,791,450,994	4,970,014,874	4,692,079,884	11,878,778,100	9,460,062,081
※기금	수입	13,392,894,080	14,160,070,430	90,410,289,319	103,440,083,843	42,756,092,710
	지출	581,584,010	10,510,671,510	90,334,778,469	103,011,399,008	43,194,512,070
	결산상잉여금	12,811,310,070	3,649,398,920	75,510,850	428,684,835	△438,419,360

- 2024회계연도 총 세입은 720,601,999,827원으로 총 세출이 574,378,512,624원 발생하여 결산상 잉여금은 146,223,487,203원입니다.
- 2024회계연도 기금 수입은 42,756,092,710원, 총 지출은 43,194,512,070원 발생하여 결산상 잉여금은 △438,419,360원입니다.

나. 함평군의 전년대비 재무제표 요약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년대비 재무제표 요약분석 》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비용	총수익	재정운영 결과
2024년	2,741,843	21,412	2,719,922	515,906	431,015	(84,891)
2023년	2,658,197	20,700	2,637,497	542,193	430,366	(111,827)
증△감	83,646	712	82,425	(26,287)	649	(26,936)

- 함평군의 한해동안 살림살이를 정리한 재정상태와 재정운영결과는 2024회계연도 순자산이 전년대비 82,425백만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3.14%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26,936백만원(24.08%) 감소하였습니다.

다. 함평군의 지난 5년간 채무의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 》

(단위 : 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채무 총계 a(b+c+d)	0	0	870,000,000	0	0
공채 b	-	-	-	-	-
차입금 c	0	0	870,000,000	0	0
채무부담행위 d	-	-	-	-	-

- 2024회계연도말 채무는 없습니다.

라.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정자립도 = 7.47% (2023회계 7.72%)

$$\frac{(\text{지방세 } 26,627,695,250\text{원} + \text{세외수입 } 26,584,439,094\text{원})}{(\text{예산규모 } 712,242,210,130\text{원})} \times 100$$

- 지방세 : 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과년도수입
-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등

○ 재정자주도 = 41.24% (2023회계 44.36%)

$$\frac{(\text{자체수입 } 53,212,134,344\text{원} + \text{의존재원 } 240,522,785,000\text{원})}{(\text{예산규모 } 712,242,210,130\text{원})} \times 100$$

- 자체수입 : 지방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재정보전금

## 2. 세입·세출 결산

### 가. 총괄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세입·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잉여금 (C=A-B)
계	712,242,210,130	720,601,999,827	574,378,512,624	146,223,487,203
일반회계	689,681,356,610	694,069,694,866	557,306,269,744	136,763,425,122
특별회계	22,560,853,520	26,532,304,961	17,072,242,880	9,460,062,081

### 《 세출 이월액 현황 》

(단위 : 원)

회계별	현년도 채무상환	이 월 액(D)				순세계잉여금 (E=C-D)
		명시	사고	계속비	보 조 금 실제반납금	
계	-	56,994,516,660	39,159,164,800	-	6,359,725,085	43,710,080,658
일반회계	-	55,530,516,660	36,929,256,820	-	6,299,678,775	38,003,972,867
특별회계	-	1,464,000,000	2,229,907,980	-	60,046,310	5,706,107,791

- 세출 결산액은 세입 결산액 720,601,999,827원의 76.9%인 574,378,512,624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46,223,487,203원입니다.
- 결산잉여금 146,223,487,203원 중 명시이월비 56,994,516,660원, 사고이월비 39,159,164,800원, 보조금반납금 6,359,725,085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710,080,658원입니다.

#### 나. 일반회계

##### (1) 세 입

### 《 일반회계 세입결산 》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1)	실제수납액 (2)	정리보류액 (3)	미수납액 {1-(2+3)}
결 산 액	689,681,356,610	699,099,466,371	694,069,694,866	112,649,710	4,917,121,795
결산확인액	689,681,356,610	699,099,466,371	694,069,694,866	112,649,710	4,917,121,795

※ 초과세입금 : 4,388,338,265(실제수납액 - 예산현액)

- 수납액은 694,069,694,866원으로 예산현액의 100.63%로 4,388,338,256원이 초과 세입 처리 되었으며, 이는 주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9.28%가 수납되었습니다.

### 《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

(단위 : 원)

일반회계 수납액	금고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694,069,694,866	694,069,694,866	0

※ 세입일계표 : 2025. 3. 20.기준

○ 일반회계 수납액은 금고출납계산서상의 금액과 일치하였습니다.

### 《 일반회계 연도별 세입현황분석 》

(단위 : 원)

연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정리보류액
2024년	689,681,356,610	699,099,466,371	694,069,694,866	112,649,710
2023년	702,084,570,815	723,054,795,133	719,013,746,782	422,281,760
증△감	△12,403,214,205	△23,955,328,762	△24,944,051,916	△309,632,050

연도별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	징수결정액 대비수납액(%)	징수결정액대비 정리보류액(%)
2024년	100.63	99.28	0.02
2023년	102.99	99.44	0.06
증△감	△2.36	△0.16	△0.04

- 2024년도 수납액은 전년도 보다 24,944,051,916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 요인은 지방교부세 등 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 정리보류액은 112,649,710원으로 전년보다 309,632,050원 감소 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정리보류액은 전년보다 0.04% 감소하였습니다.

## 《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결산 》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정리보류액 (C)	미수납액 (D=A-(B+C))	
<b>계</b>	689,681,356,610	699,099,466,371	694,069,694,866	112,649,710	4,917,121,795	
지방세	소 계	24,770,000,000	27,702,395,030	26,627,695,250	109,851,390	964,848,390
	보통세	24,520,000,000	27,084,510,260	26,300,368,710	55,219,740	728,921,810
	지난년도 수 입	250,000,000	617,884,770	327,326,540	54,631,650	235,926,580
세외수입	소 계	17,322,820,000	24,778,039,065	20,822,967,340	2,798,320	3,952,273,405
	경 상 적 세외수입	8,622,457,000	9,140,800,450	9,100,663,350	-	40,137,100
	임 시 적 세외수입	8,427,203,000	13,277,024,451	10,411,777,480	2,798,320	2,862,448,651
	지방행정체 재·부과금	273,160,000	2,360,214,164	1,310,526,510	-	1,049,687,654
지 방 교부세	지 방 교부세	229,444,000,000	229,482,599,000	229,482,599,000	-	-
조정 교부금 등	시군조정 교부금등	7,555,000,000	11,040,186,000	11,040,186,000	-	-
보조금	소 계	227,443,485,000	223,743,047,160	223,743,047,160	-	-
	국 고 보조금등	175,566,454,000	171,939,807,460	171,939,807,460	-	-
	시·도비 보조금등	51,877,031,000	51,803,239,700	51,803,239,700	-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보전수입등	183,146,051,610	182,353,200,116	182,353,200,116	-	-

-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3.84%인 26,627,695,250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3.0%인 20,822,967,34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33.06%인 229,482,599,000원, 조정교부금은 1.59%인 11,040,186,000원, 보조금은 32.24%인 223,743,047,160원, 보전수입은 26.27%인 182,353,200,116원이 수납되었습니다.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리보류액은 112,649,710원, 미수납액은 4,917,121,795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2) 세 출

### 《 일반회계 세출결산 확인 》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결 산 액	588,463,352,000	689,681,356,610	557,306,269,744	94,065,323,880	31,221,742,592
결산확인액	588,463,352,000	689,681,356,610	557,306,269,744	94,065,323,880	31,221,742,592
차 액	-	-	-	-	-

- 예산액은 588,463,35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01,218,004,61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689,681,356,610원입니다.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0.79%에 해당하는 557,306,269,744원이며, 이월액은 94,065,323,880원입니다.
- 불용액은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이월액과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하여 예산현액의 4.53%에 해당하는 31,221,742,592원입니다.

### 《 일반회계 예산이용·전용·이체·예비비사용 》

(단위 : 원)

구 분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금 액	-	139,995,000	-	4,083,264,760

-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군수(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11건에 139,995,000원으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외 11건에 사용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액은 4,083,264,760원으로 지역체육시설 관리 지원 사업 외 12건에 사용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

(단위 : 원)

일반회계 지출액	금고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557,306,269,744	557,306,269,744	0

※ 세출일계표 : 2025. 3. 20.기준

○ 일반회계 세출결산서의 지출액은 금고출납계산서의 금액과 일치 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집행현황 》

(단위 : 원, %)

구 분	2023년도 집행액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증△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율	금 액	비율
계	560,404,980,846	689,681,356,610	557,306,269,744	80.81%	△3,098,711,102	△0.55%
일반공공행정	28,020,681,836	23,043,815,830	20,297,818,305	88.08%	△7,722,863,531	△27.56
공공질서및안전	21,617,901,090	27,551,538,910	18,411,159,220	66.82%	△3,206,741,870	△14.83
교육	2,458,123,560	2,154,406,000	2,130,356,760	98.88%	△327,766,800	△13.33
문화및관광	35,699,303,920	59,148,649,900	46,533,519,610	78.67%	10,834,215,690	30.35
환경	54,782,161,430	86,890,549,460	66,499,081,563	76.53%	11,716,920,133	21.39
사회복지	97,660,753,240	109,649,707,870	102,686,559,500	93.65%	5,025,806,260	5.15
보건	11,195,070,910	8,642,987,740	8,351,114,400	96.62%	△2,843,956,510	△25.40
농림해양수산	173,074,856,337	212,230,732,630	161,152,618,390	75.93%	△11,922,237,947	△6.89
산업·중소기업	20,219,452,490	26,828,487,040	17,433,431,590	64.98%	△2,786,020,900	△13.78
교통및물류	23,008,625,250	31,582,534,870	23,960,896,084	75.87%	952,270,834	4.14
국토및지역개발	33,079,915,784	34,609,108,360	27,499,798,110	79.46%	△5,580,117,674	△16.87
기타	59,588,134,999	64,346,025,000	62,349,916,212	97%	2,761,781,213	4.63
예비비	-	3,002,813,000	-	0.00	-	-

- 2024회계연도 세출 기능별 집행액은 일반행정 20,297,818,305원, 공공질서 및 안전 18,411,159,220원, 교육 2,130,356,760원, 문화 및 관광 46,533,519,610원, 환경 66,499,081,563원, 사회복지 102,686,559,500원, 보건 8,351,114,400원, 농림해양수산 161,152,618,390원, 산업·중소기업 17,433,431,590원, 교통 및 물류 23,960,896,084원, 국토 및 지역개발 27,499,798,110원, 기타 62,349,916,212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은 80.79% 입니다.
- 전년대비 집행액이 증가한 분야는 문화 및 관광 10,834,215,690(30.35%), 환경 11,716,920,133(21.39%), 사회복지 5,025,806,260(5.15%), 기타 62,349,916,212(4.63%), 교통 및 물류 23,960,896,084(4.14%)이며,
- 전년대비 집행액이 감소한 분야로는 일반공공행정 7,722,863,531(△27.56%), 보건 2,843,956,510(△25.40%), 국토 및 지역개발 27,499,798,110원(△16.87), 공공질서 및 안전 18,411,159,220(△14.83), 산업·중소기업 17,433,431,590원(△13.78%), 교육 2,130,356,760원(△13.33%), 농림해양수산 161,152,618,390(△6.89%) 입니다.

## 다. 특별회계

### (1) 세 입

#### 《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 》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실제수납액	불 납 결 손 액	미수납액
계	22,560,853,520	26,811,195,751	26,532,304,961	0	278,890,790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604,495,000	1,014,048,423	1,014,048,423	-	-
건축진흥특별회계	121,757,000	514,378,740	237,349,740	-	277,029,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0,000,000	30,069,950	30,069,950	-	-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7,478,697,840	8,086,839,612	8,086,839,612	-	-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7,052,885,680	9,699,654,373	9,699,654,373	-	-
수질개선특별회계	57,272,000	68,549,510	68,549,510	-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29,794,000	734,099,875	734,099,875	-	-
함평공영터미널특별회계	104,132,000	105,365,520	105,365,520	-	-
상수도특별회계	6,381,820,000	6,557,539,978	6,555,678,188	-	1,861,790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	649,770	649,770	-	-
결산확인액	22,560,853,520	26,811,195,751	26,532,304,961	0	278,890,790
차 액	-	-	-	-	-

- 특별회계 수납액은 26,532,304,961으로 예산현액 대비 117.6%, 징수결정액 대비 98.96%입니다.
- 검사결과 세입예산 징수결정 및 수납은 과목별로 적정 계상되었고 미수납액은 건축진흥특별회계 277,029,000원, 상수도특별회계 1,861,7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각 회계의 결산 확인액과 일치하였습니다.

《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

(단위 : 원)

특별회계명	수납액	금고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계	21,912,863,820	21,912,863,820	0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014,048,423	1,014,048,423	0
건축진흥특별회계	237,349,740	237,349,74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0,069,950	30,069,95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8,086,839,612	8,086,839,612	0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9,699,654,373	9,699,654,373	0
수질개선특별회계	68,549,510	68,549,510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34,099,875	734,099,875	0
함평공영터미널특별회계	105,365,520	105,365,520	0
상수도특별회계	6,555,678,188	6,555,678,188	0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49,770	649,770	0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	125,550	125,550

※ 세입일계표 : 2025. 3. 20.기준

-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와 대사한 결과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가 반영되지 않아 금액 125,550원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 (2) 세 출

### 《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계	20,034,015,000	22,560,853,520	17,072,242,880	3,693,907,980	1,734,656,350
주민소득지원 기금특별회계	604,495,000	604,495,000	453,212,400	-	151,282,600
건축진흥특별회계	121,757,000	121,757,000	38,458,200	-	83,298,8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30,000,000	30,000,000	28,952,000	-	-
농공지구조성 사업특별회계	4,984,696,000	7,478,697,840	3,541,098,270	3,693,907,980	243,691,590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7,020,049,000	7,052,885,680	6,529,253,350	-	523,632,330
수질개선특별회계	57,272,000	57,272,000	57,271,120	-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29,794,000	729,794,000	667,495,260	-	3,301,310
함평공영터미널특별회계	104,132,000	104,132,000	98,193,030	-	5,938,970
상수도특별회계	6,381,820,000	6,381,820,000	5,658,309,250	-	723,510,750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	-	-	-	-
결산확인액	20,034,015,000	22,560,853,520	17,072,242,880	3,693,907,980	1,734,656,350
차 액	-	-	-	-	-

-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예산액 20,034,01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526,838,520원을 합한 22,560,853,520원입니다.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5.67%인 17,072,242,880원입니다.
- 이월액은 3,693,907,980원이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이월액입니다.
- 불용액은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이월액과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하여 7.69%인 1,734,656,350원입니다.

《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

(단위 : 원)

구 분	지 출 액	금고출납계산서 금 액	차 액
계	17,072,242,880	17,072,242,880	0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453,212,400	453,212,400	0
건축진흥특별회계	38,458,200	38,458,20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8,952,000	28,952,000	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3,541,098,270	3,541,098,270	0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6,529,253,350	6,529,253,350	0
수질개선특별회계	57,271,120	57,271,120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67,495,260	667,495,260	0
함평공영터미널특별회계	98,193,030	98,193,030	0
상수도특별회계	5,658,309,250	5,658,309,250	0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	-	-

※ 세출일계표 : 2025. 3. 20.기준

○ 각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서의 집행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금액과 일치 하였습니다.

## 라.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2024회계연도의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 사고이월 · 계속비이월 현황 》

(단위 : 원)

구 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56	96,153,681,460	158	56,994,516,660	198	39,159,164,800	0	0
일반회계	352	92,459,773,480	157	55,530,516,660	195	36,929,256,820	0	0
특별회계	4	3,693,907,980	1	1,464,000,000	3	2,229,907,980	0	0

- 명시이월은 158건 56,994,516,660원, 사고이월은 198건 39,159,164,800원이며, 이월 사업비는 예산현액 712,242,210,130원 대비 13.5%로서 전년대비 0.7% 감소하였습니다.

### 3. 기금의 결산

2024회계연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 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조성액	사용액	
계	38,993,499,048	△14,225,997,718	4,232,594,162	18,458,591,880	24,767,501,330
인재양성기금	8,853,661,873	990,463,680	1,684,586,660	694,122,980	9,844,125,553
농산물안정기금	3,923,729,239	205,801,920	205,801,920	-	4,129,531,159
통합재정안정화 기금(통합계정)	2,824,567,790	57,625,700	83,323,700	25,698,000	2,882,193,490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재정안정화 계정)	18,035,306,780	△15,836,558,170	389,441,830	16,226,000,000	2,198,748,610
투자유치진흥기금	1,721,694,490	232,759,780	332,759,780	100,000,000	1,954,454,270
사회복지기금	1,567,025,477	51,040,502	58,040,502	7,000,000	1,618,065,979
재난관리기금	997,848,255	174,105,360	614,203,500	440,098,140	1,171,953,615
고향사랑기금	-	357,556,470	387,556,470	30,000,000	357,556,470
환경보전기금	757,407,953	△438,988,660	182,011,340	621,000,000	318,419,293
옥외광고발전기금	199,046,420	△23,027,890	291,644,870	314,672,760	176,018,530
식품진흥기금	113,210,771	3,223,590	3,223,590	-	116,434,361

- 검사결과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4,767,501,330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 38,993,499,048원보다 14,225,997,718원 감소하였습니다.
- 2024년도 기금 지출액은 18,458,591,880원이며 기금의 운용은 당초 계획 대로 집행되었습니다.

## 《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 》

(단위 : 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5년 평균 증가율
전년도말 조성액	14,513,477,706	27,324,787,776	30,974,186,696	89,730,932,879	38,993,499,048	28.0%
당해 연도 조성액	13,392,894,080	14,160,070,430	59,734,555,023	13,982,291,689	4,232,594,162	△25.0%
당해 연도 사용액	581,584,010	10,510,671,510	977,808,420	64,719,725,520	18,458,591,880	137.4%
당해연도말 조성액	27,324,787,776	30,974,186,696	89,730,933,299	38,993,499,048	24,767,501,330	△2.4%

- 최근 5년간 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당해연도말 조성액과 당해연도 조성액은 각각 2.4%, 25% 감소하였으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137.4% 증가하였습니다.

#### 4. 재무제표 결산

2024회계연도 함평군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전년대비 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액	비율
자산총계	2,658,654	100.00	2,741,843	100.00	83,189	3.1%
유동자산	222,049	8.35	185,037	6.75	△37,012	△16.7%
투자자산	7,374	0.28	4,658	0.17	△2,716	△36.8%
일반유형자산	101,936	3.83	116,046	4.23	14,110	13.8%
주민편의시설	198,733	7.46	217,033	7.92	18,300	9.2%
사회기반시설	2,123,703	79.89	2,213,617	80.73	89,914	4.2%
기타비유동자산	4,858	0.19	5,452	0.20	594	12.2%
부채총계	20,700	100.00	21,412	100.00	712	3.4%
유동부채	8,907	43.03	12,139	56.69	3,232	36.3%
장기차입부채	2,788	13.47	-	0.00	△2,788	△100.0%
기타비유동부채	9,004	43.50	9,273	43.31	269	3.0%
순자산총계	2,637,954	100.00	2,719,922	100.00	81,968	3.1%
고정순자산	2,423,475	91.87	2,546,650	93.63	123,175	5.1%
특정순자산	36,205	1.37	21,979	0.81	△14,226	△39.3%
일반순자산	178,274	6.76	151,293	5.56	△26,981	△15.1%

- 함평군의 자산은 2,741,843백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658,654백만 원보다 83,189백만 원(3.1%) 증가하였습니다.
- 증가율이 높은 자산은 사회기반시설과 주민편의시설 순이며, 2024회계연도 부채는 21,412백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0,700백만 원보다 712백만 원(3.4%) 증가 하였습니다.

## 《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전년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사업순원가	120,572	126,284	5,712	4.74%
II. 관리운영비	61,962	64,508	2,546	4.11%
III. 비배분비용	20,863	21,980	1,117	5.35%
IV. 비배분수익	12,754	14,189	1,435	11.25%
V. 재정운영순원가 ( I + II + III - IV )	190,644	198,584	7,940	4.16%
VI. 일반수익	302,471	283,476	△18,995	△6.28%
VII. 재정운영결과 ( V - VI )	(111,827)	(84,892)	△26,935	△24.09%

- 2024회계연도 함평군의 사업순원가는 126,284백만 원이고 관리운영비 64,508백만 원, 비배분비용 21,980백만 원 및 비배분수익 14,189백만 원을 뺀 재정운영순원가는 198,584백만 원입니다.
-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283,476백만 원을 뺀 2024회계연도 함평군의 재정운영결과는 84,892백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 5. 성과보고서

함평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 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4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함평군은 본 회계연도의 '새로운 도약 희망찬 함평'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총 86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7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 《 성과지표 달성현황 》

(단위 : 개, %)

구 분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A)	초과달성 (B)	달성 (B)	미달성	달성률 (B/A)
계	21	86	175	10	120	45	74%
기획예산실	1	2	6	2	4	0	100%
관광정책실	1	4	13	1	9	3	77%
농업정책실	1	6	12	0	3	9	25%
총무과	1	3	6	0	6	0	100%
민원봉사과	1	3	8	0	8	0	100%
재무과	1	3	9	0	9	0	100%
인구경제과	1	5	9	0	5	4	56%
지역개발과	1	5	5	1	2	2	60%
문화체육과	1	4	4	0	2	2	50%
농어촌공동체과	1	5	5	0	3	2	60%
환경관리과	1	5	8	3	4	1	88%
주민복지과	1	7	17	1	13	3	82%
가족행복과	1	4	7	0	3	4	43%
축산과	1	4	5	0	5	0	100%
안전관리과	1	4	7	0	6	1	86%
건설교통과	1	5	9	0	2	7	22%
산림공원과	1	4	8	0	6	2	75%
보건소	1	5	11	1	8	2	82%
농업기술센터	1	3	13	1	12	0	100%
맑은물사업소	1	4	10	0	7	3	70%
의회사무과	1	1	3	0	3	0	100%

- 총무과 등 7개 실과는 100% 달성한 반면에 관광정책실 등 14개 실과소는 100% 달성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 6.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

### 가. 채 권

#### 《 채 권 현 황 》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 연도 발생액	당해 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10,557,238,791	445,000,000	-	11,002,238,791
일반회계	6,027,666,194	-	-	6,027,666,194
기타특별회계	4,529,572,597	445,000,000	-	4,974,572,597

- 검사결과 채권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002,238,791원으로 작년 10,557,238,791원보다 445,000,000원 증가 하였으며,
- 이는 기타특별회계의 주민소득지원 채권액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 나. 채 무

#### 《 채 무 현 황 》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발생액	상환소멸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0	0	0	0	0
일반회계	0	0	0	0	0
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0	0	0	0	0

- 검사결과 2024회계연도 채무는 없습니다.

## 다. 공유재산

당해 연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공유 재산 증 감 현 황 》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 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계	1,602,472,874,697	807,772,871,453	91,683,660,363	2,318,562,085,787	
행정 재산	소계	974,818,024,178	92,490,920,248	49,923,516,278	1,017,385,428,148
	공용재산	161,936,698,534	48,590,821,430	15,239,132,702	195,288,387,262
	공공용재산	809,899,398,320	43,900,098,818	34,655,023,576	819,144,473,562
	기업용재산	-	-	-	-
	보존용재산	2,981,927,324	-	29,360,000	2,952,567,324
일반재산	47,707,164,849	1,608,874,745	41,760,144,085	7,555,895,509	
건설중인자산	579,947,685,670	713,673,076,460	-	1,293,620,762,130	

- 당해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716,089,211,090원 증가한 2,318,562,085,787원입니다.
- 주요 증가요인은 공용재산의 증가에 기인하였습니다.

## 라. 물 품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물 품 증 감 현 황 》

(단위 : 개,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 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취 득	처 분	
수 량	850	12	1	861
금 액	8,283,629,134	267,167,470	9,749,760	8,541,046,844

- 당해연도말 물품의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257,417,710원 증가한 8,541,046,844원입니다.
- 주요 증가요인은 관용차량 등 구입에 따른 것입니다.

### Ⅲ. 개선 및 권고사항

#### 1. 초과세입 과다하므로 적정 세입예산을 편성하도록 함 (전부서, 총괄 기획예산실, 재무과)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2024회계연도 세입예산 총괄을 살펴보면 초과세입이 8,359백만원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초과세입 발생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 연도별 초과세입 발생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초과세입(합계)	7,675	5,297	△2,895	23,492	8,359
지방세	1,928	851	922	789	1,857
세외수입	934	5,860	4,346	9,818	6,273
지방교부세	108	△387	△10,095	12,287	38
조정교부금	2,302	1,222	2,726	2,347	3,485
보조금	1,262	2,167	△1,866	△2,258	△3,701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143	△4,415	1,071	509	406

###### □ 문제점

- 2024회계연도 초과세입은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과다발생하고 있으며, 초과세입금 8,359백만원은 주로 지방세,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등에서 과다 초과세입이 발생하고 있음.
- 2024년도의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총 3회 편성한 바 있으며, 최종 추경인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각 세입항목별로 초과세입이 과다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임.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제1항에서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제2항에서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2024년도 최종 추경예산 편성시에 발생한 초과세입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모두 세입예산에 편입되어야 하는 것임.

## 나. 개선 및 권고사항

- 함평군의 초과세입 과다발생은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의 원인제공을 하고 있으므로 적정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초과세입의 과다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한 회계연도의 수입은 모두 세입예산에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4년도와 같은 과다한 초과세입발생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상황이므로 향후 관련 법규사항을 준수하여 과다한 초과세입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임.

## 2.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 필요함(재무과)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5,039백만원으로 전년도 체납액 대비 24.7% 증가한 998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지방세 체납액은 1,07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액은 전년대비 943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2024회계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sup>1)</sup> 5,039백만원중 세외수입 체납액이 3,965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8.7%를 차지하고 있어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 징수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 < 연도별 일반회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5,012	5,592	3,248	4,041	5,039
지방세	658	673	757	1,019	1,074
세외수입	4,354	4,919	2,491	3,022	3,965

- 또한,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미수납액 5,196백만원중 납세태만이 3,764백만원으로 그 비중이 72.4%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세 등의 미수납사유가 납세태만이 주된 사유이므로 체계적인 징수대책을 수립을 한다면 미수납 사유가 자금압박이나 폐업·부도 보다는 효과적인 징수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1) 체납액은 미수납액에 정리보류액을 합한 금액

< 2024회계연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미수납액	사 유 별					
		납세 태만	자금 압박	폐업 부도	무재산	기타	납기 미도래
합계	5,196	3,764	289	156	108	241	308
일반회계	4,917	3,764	289	156	108	241	308
건축진흥특별회계	278						
상수도특별회계	1						

□ 문제점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5,030백만원으로 전년도 체납액 대비 24.5% 증가함. 이와 같은 체납액의 증가는 보통교부세 산정시에 세입확충에 대한 자체노력 부족으로 보통교부세 감액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2023회계연도 결산결과 전년 대비 체납액 증가로 2025년도 보통교부세를 1,240백만원을 감액받은 바 있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체납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어서 2026년도 보통교부세도 감액이 예상됨.

나.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일정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체납액 감축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최초 미수납 시 부터 미수납 사유를 정밀하게 분석한 후 납세태만에 대하여는 납세의무 이행과 공평 과세실현을 위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체납자의 금융재산 및 부동산 등을 조회 및 압류 하는 등의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함.

### 3.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 편성 철저(전부서, 총괄-재무과)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일반회계 세외수입 현황>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정리보류액 (C)	미수납액 (D=A-(B+C))
200 세외수입	17,322,820,000	24,778,039,065	20,822,967,340	2,798,320	3,952,273,405
210 경상적세외수입	8,622,457,000	9,140,800,450	9,100,663,350	-	40,137,100
211 재산임대수입	206,990,000	432,438,270	425,447,170	-	6,991,100
212 사용료수입	2,005,170,000	1,719,283,250	1,694,522,750	-	24,760,500
213 수수료수입	1,372,700,000	1,381,013,720	1,378,099,570	-	2,914,150
214 사업수입	154,800,000	242,236,390	242,133,390	-	103,000
215 징수교부금수입	379,322,000	471,105,900	465,743,890	-	5,362,010
216 이자수입	4,503,475,000	4,894,722,920	4,894,716,580	-	6,340
220 임시적세외수입	8,427,203,000	13,277,024,451	10,411,777,480	2,798,320	2,862,448,651
221 재산매각수입	30,000,000	2,006,414,170	2,006,414,170	-	-
223 보조금반환수입	201,725,000	1,953,697,660	1,832,848,610	-	120,849,050
224 기타수입	8,045,478,000	6,406,872,230	6,091,347,300	-	315,524,930
225 지난년도수입	150,000,000	2,910,040,391	481,167,400	2,798,320	2,426,074,671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73,160,000	2,360,214,164	1,310,526,510	-	1,049,687,654
231 과징금	-	1,104,107,050	234,911,410	-	869,195,640
232 이행강제금	-	1,126,120	1,126,120	-	-
233 변상금	-	19,444,030	19,200,380	-	243,650
234 과태료	255,160,000	418,117,280	255,609,640	-	162,507,640
235 환수금	-	45,191,604	41,349,640	-	3,841,964
236 부담금	18,000,000	770,128,080	756,229,320	-	13,898,760
237 법칙금	-	2,100,000	2,100,000	-	-

## □ 문제점

- 세입·세출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 및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 바, 이에 세외수입 추계는 과거실적, 향후 세입 전망을 바탕으로 면밀하게 예산을 반영하여야 함.
- 2024 세외수입 예산현액(17,322,820천원)보다, 초과 수입(3,500,147천원)으로, 세외수입 실제 수납액(20,822,967천원)이 발생함.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연계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세입예산의 과소 설정으로 세출 수요가 축소 되었음.

## 나. 개선 및 권고사항

- 세외수입은 재정 자율성 확보와 재정 다변화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이전재원(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에 의존하지 않고, 군민의 현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인 바,
- 세외수입 각 세목의 성격, 당해연도의 특수요인(징수시기, 징수특징)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세입 예산(추경예산 활용)에 반드시 반영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에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함.

#### 4.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예산반영 철저(전부서, 기획예산실)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명세서>

(단위 : 원)

과목 조직-장-관-항-목	예산액(A)	징수결정액	수납총액(B)	차액(A-B)
총계	6,560,539,000	6,822,336,418	6,822,336,418	△261,797,418
712-01 국고보조금사용잔액	4,752,445,000	3,456,057,524	3,456,057,524	1,296,387,476
712-02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1,808,094,000	3,366,278,894	3,366,278,894	△1,558,184,894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명세서>

(단위 : 원)

과목 조직-장-관-항-목	예산액	예산현액(A)	지출액(B)	집행잔액(A-B)
총계	9,325,802,000	9,558,350,980	9,138,996,200	419,354,780
국고보조금반환금	6,530,564,000	6,763,112,980	6,466,505,670	296,607,310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795,238,000	2,795,238,000	2,672,490,530	122,747,470

###### □ 문제점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환금은 9,138,996,200이 발생하였는 바, 세입수납총액 6,822,336,418원에 비하여 2,316,659,782원 지출 차액을 나타내고 있어, 세입과 연계한 세출 예산편성운영이 요구됨.

##### 나. 개선 및 권고사항

- 국고 및 도비 보조금의 정산 철저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세입과 세출의 정확한 추계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기 바람.

## 5.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의 일반예비비로의 통계목변경은 관련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지역개발과, 총괄-기획예산실)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함평군은 2024회계연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서 1,500백만원을 일반예비비로 예산을 변경사용하여 지출결정을 하고 있음.

#### < 2024년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의 일반예비비 변경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사용 신청	지출 결정	비고
합계	7,236	4,233	5,733	
일반예비비	2,226	2,072	3,572	- 축산특화농공단지 배상금 2,977 (목적예비비에서 변경 1,500 포함)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5,010	2,160	2,160	- 일반예비비로 변경 1,500

#### □ 문제점

- 함평군은 2024년도 12월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사대금 추가 청구의 소에 따른 배상액 지급을 위한 일반예비비 예산 부족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서 1,500백만원을 일반예비비로의 통계목 변경을 한 바 있음.
- 일반예비비(801-01)는 「지방자치법」 제144조<sup>2)</sup>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sup>3)</sup>에 따른 예비비 (각 회계별 예산총액 대비 1%범위 내 편성 필요)이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801-02)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2항<sup>4)</sup>에 따른 예비비 (예비비 편성 한도는 없음)로서 엄연히 용도 및 편성한도에서 구분하고 있는 것임

2)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4)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서는 예산의 변경사용은 동일 단위 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도록 하되, 변경사용 제한으로는 재변경사용 등은 불가하고, 전용제한 편성목은 변경도 제한되며, 단위사업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는 변경 사용이 불가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예비비의 경우에는 단위사업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변경이 불가한 것임.

## 나. 개선 및 권고사항

-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그 용도 및 편성한도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비비 지출 시에는 관련 법규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서는 단위사업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는 예산의 변경 사용이 불가하도록 기준을 시달하고 있으므로 향후 예비비 통계목간 예산변경 시에는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 6. 일반예비비의 지출은 관련 법규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해당부서, 총괄-기획예산실)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함평군은 2024회계연도 일반예비비에서 다음과 같이 8건 527백만원을 폭설, 폭염 및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용도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임.

#### < 2024년도 일반예비비 지출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통계목	지출액	지출사유
합 계	-	527	
지역체육시설 관리	시설비	361	- 폭설로 인한 함평 나비골프연습장 파손복구
재난예방활동 강화	시설비	27	- 폭염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그늘막 설치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100	- 호우로 인한 응급복구공사 추진
그린공원 조성 및 관리	배상금	24	- 수산봉 작업자 사고 구상금 지급
우량소나무림 예방나무주사 (4건)	시설비	15	- 산림병해충 방제

#### □ 문제점

- 함평군은 2024회계연도 일반예비비에서 8건 527백만원을 폭설, 폭염 및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용도로 지출하고 있음.
- 일반예비비(801-01) 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있음.

- 재해·재난 목적예비비(801-02)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2024년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한 폭설, 폭염 및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8건 527백만원은 일반예비비 지출 항목이 아니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 항목인 것임.

## 나. 개선 및 권고사항

-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그 용도 및 편성한도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비비 지출 시에는 관련 법규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향후 폭염, 폭설 및 호우 피해복구비 등은 일반예비비가 아닌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7. 완성에 수년을 요(要)하며 중단없이 이행하는 사업은 계속비로 운영하도록 함  
(해당부서, 총괄-기획예산실)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함평군은 완성에 수년을 요(要)하며 중단없이 이행하는 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주요사업들은 대부분 사업기간이 수년이 소요되는 중장기적 사업들이임을 알 수 있음.

< 함평군 2024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2024년 예산	종합진도 (%)	주관부서
함평 에듀테인먼트 조성사업(전환)	13,461	2024.01~ 2026.04	3,550	60%	관광정책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9,000	2021.01~ 2024.12	892	77%	농업정책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6,580	2023.01~ 2025.06	-	60%	지역개발과
문화예술회관 건립(전환)	17,800	2023.01~ 2025.12	200	35%	문화체육과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보조)	20,712	2020.01~ 2024.12	7,999	70%	농어촌 공동체과
내교·기각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43,570	2023.01~ 2026.12	700	5%	안전관리과
해상재난 대피시설,대피로 설치사업	32,546	2014.12~ 2024.12	1,653	90%	건설교통과
함평공공하수처리 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27,995	2017.01~ 2025.12	6,950	55%	맑은물 사업소
함평읍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	29,367	2024.01~ 2026.12	11,607	35%	맑은물 사업소
학교면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	20,958	2020.09~ 2025.12	4,223	15%	맑은물 사업소

- 2024회계연도 함평군 명시이월 사업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이월사업이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중장기 사업들이어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사유를 설명하고 있음.

이와 같이,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이러한 사업들은 계속비 대상이며 명시 이월이 아닌 계속비이월 대상으로서 관리 및 운용하여야 할 것임.

〈 2024년도 명시이월 이월사유 중 준공기한 미도래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명시이월액	이월사유
함평 에듀테인먼트 조성사업(전환)	시설비	3,888	1,085	- 공사 1차분 준공기한 미도래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시설비	3,294	191	- 준공예정일 미도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2,079	858	- 준공기한 미도래
함평스포츠타운 조성사업(전환)	시설비	3,320	1,736	- 착공시기 미도래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보조)	시설비	10,058	3,898	- 준공기한 미도래
내교·기각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시설비	1,116	364	- 준공기한 미도래
해상재난 대피시설, 대피로 설치사업	시설비	3,400	2,559	- 준공기한 미도래
동림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시설비	1,271	563	- 장기계속계약에 따른 공사기간 미도래
함평공공하수처리 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	7,252	986	- 준공기한 미도래
함평읍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	시설비	12,291	1,006	- 준공기한 미도래
학교면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	시설비	6,731	2,065	- 준공기한 미도래

□ 문 제 점

-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법 제42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年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함.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동 법 제42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강행규정을 두고 있음.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 함평군에서 2024회계연도에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에 해당하며 이들 사업들은 중단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계속비 대상인 것임.

## 나. 개선 및 권고사항

- 함평군은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사업들을 주요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러한 중장기 사업들은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에 해당하며 이들 사업들은 중단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계속비 대상인 것임.
- 따라서, 함평군은 완성하기 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로서 중단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를 준수하여 계속비로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임.
- 또한, 2024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중에는 이월사유로 장기계속사업으로서 준공기한 미도래를 설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들은 향후에는 계속비 대상으로서 관리 및 운용하여야 할 것임.

## 8. 특별회계의 집행율이 저조하므로 집행을 제고방안을 수립하도록 함 (민원봉사과,지역개발과,농업정책실)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2024회계연도 특별회계의 예산집행률이 75.7%로서 일반회계 집행율 80.8% 대비 저조한 실정이며 특별회계 이월액이 3,693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706백만원으로서 과다한 실정이므로 특별회계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실정임.

#### < 2024년도 예산 집행율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율	이월액	순세계잉여금
계	712,242	574,378	80.6%	96,153	43,710
일반회계	689,681	557,306	80.8%	92,460	38,004
특별회계	22,561	17,072	75.7%	3,693	5,706

#### □ 문제점

#### < 2024년도 집행율 저조 특별회계 현황 >

(단위: 백만원)

특별회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율	순세계잉여금
건축진흥특별회계	121	38	31.4%	198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7,467	3,541	47.4%	851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604	453	75.0%	560

- 2024년도 건축진흥특별회계의 예산집행율은 31.4%이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집행율은 47.4%이며,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의 예산 집행율은 75.0%로서 이들 집행률 저조 특별회계의 집행을 제고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 나. 개선 및 권고사항

-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특별회계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즉,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함으로써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집행율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을 통하여 안정적인 재정수입 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임.

## 9. 특별회계 체계적 관리 필요(지역개발과)

### 가. 현황 및 문제점

(단위:원)

부서명	회계명	설치년도	금고잔액	비고
지역개발과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2005년	125,550	

- 함평군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등 11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나 예산서 및 결산서에는 10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유는 2005년 설치 운영해오다 2021년에 사업목적 달성으로 2022년부터 사업을 미추진한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가 폐지되지 않았음에도 예산편성과 결산을 이행하지 않아 설치수가 차이를 보임.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잔액을 불용처리 반납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특별회계를 폐지하거나 일몰제(존속기한 5년)를 초과하여 운영할려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나. 개선 및 권고사항

- 특별회계는 설치하여 목적이 달성되면 행정절차를 거쳐 폐지하여야 하고 일몰제(존속기한 5년)을 초과하여 운영할려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 운영되어야 하는데 의회의 승인도 없고 2021년 이후 운영 실적이 전무하므로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불필요할 경우 행정절차를 거쳐 폐지하도록 권고함.

## 10.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관리 철저(농업정책실,문화체육과,보건소)

### 가. 현황 및 문제점

(단위:천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계	보조금 정산액	지출잔액
계	3개사업	176,346	146,793	70,732	△41,178	2,638	△43,816
농업정책실	농촌체험마을 육성지원 (사무장채용)	21,716	16,480	9,086	△3,850	△3,850	-
문화체육과	스포츠강좌 이용권지원	114,000	92,501	56,800	△35,301	4,515	△39,816
보건소	감염병감시 전담요원운영	40,630	37,812	4,846	△2,027	1,973	△4,000

- 보조금사업 추진시 집행잔액이 마이너스(-)인 사업은 예산편성액 대비 보조금 교부 및 실제 수령액을 확인하지 않고 수령액보다 초과 지출을 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데
- 결과적으로 자체재원을 그만큼 더 집행하게 되며 초과 지출액의 규모가 크다면 군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됨.  
농업정책실 등 3개실과소의 보조지원사업은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적어 집행잔액이 플러스(+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과다 반납함으로써 자체재원을 초과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마이너스(-)가 되었음.

### 나. 개선 및 권고사항

- 업무담당자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실제수령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서 보조금 반납금이 없도록 해야 함. 만약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할 경우 어떤 사유로 발생하여 반납하는지 원인 분석을 하여 자체재원이 초과지출 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방안을 연구하고 인사이동 이나 사무분장 변경시에는 철저한 업무 인계·인수와 업무연찬을 권고함.

## 11. 지방보조금 집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감축방안을 수립하도록 함 (전부서, 총괄-기획예산실)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2024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집행액은 53,098백만원으로 세출결산액 대비 9.24%로서 전년대비 0.44%p 증가한 수준이며, 최근 들어 매년 지방보조금 집행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 연도별 지방보조금 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세출결산액	468,668	468,951	572,095	570,439	574,378
지방보조금(민간)	35,173	34,613	50,231	50,213	53,098
비율	7.50%	7.38%	8.78%	8.80%	9.2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대상비목 : 민간경상보조, 민간단체운영비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시설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보조(자체재원)

-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함.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

또한,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같이,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집행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목하여 매년 지방보조금 운용평가를 공개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 6개 비목 중에서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자체재원)의 2개 비목에 대해서는 집행실적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를 감축하는 등 지방보조금 세출효율화에 대하여 자체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음

〈 함평군 연도별 지방보조금 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세출결산액	468,668	468,951	572,095	570,439	574,378
지방보조금(민간)	19,030	16,636	29,056	27,152	29,207
비중	<b>0.0406</b>	<b>0.0355</b>	<b>0.0508</b>	<b>0.0476</b>	<b>0.0508</b>
유형단체 비중	0.0384	0.0365	0.0361	0.0384	?
보통교부세 증감	1,574	858	△15,181	1,705	감액예상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대상비목 :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자체재원)

- 함평군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서는 전년 대비 지방보조금 비중이 줄어들어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아 2025년도 보통교부세 1,705백만원을 증액 받은 바 있으며, 2022회계연도 결산에서는 전년 대비 지방보조금 비중이 대폭 증가하여 2024년도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아 보통교부세 △15,181백만원을 감액 받은 바 있음.
- 2024회계연도의 결산의 경우에는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자체재원) 집행 비중이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으므로 2026년도 보통교부세는 페널티를 받게되어 보통교부세 감액이 예상됨.

## □ 문제점

- 연도별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자체재원)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함평군의 지방보조금 집행비중이 유형 지방자치단체의 비중보다 높은 실정임.
-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 2개 지방보조금의 전년대비 비중 증가로 인하여 2024년도에는 △15,181백만원의 보통교부세 감액조치를 받은 바 있으며, 또한, 2024회계연도 결산결과 2개 지방보조금의 전년대비 비중 증가로 인하여 2026년도에도 보통교부세 감액이 예상됨.

## 나. 개선 및 권고사항

-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집행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따라 매년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음.
-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보조금 6개 비목 중에서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자체재원)의 2개 비목에 대한 집행액 비중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를 감축하고 있으므로 동 지방보조금의 편성 및 집행액을 줄여나감으로써 세출효율화에 대한 자체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 12.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예산총칙에 규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기획예산실)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임.
- 함평군의 2024회계연도 명시이월은 2024년도 최종추경 (제3회추경)예산 총칙에 규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다음연도 본예산 예산총칙에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도 본예산 예산총칙에는 전년도 명시이월을 규정하고 있음.

#### <함평군 2024년도 예산서 예산총칙 규정 현황>

구분	본예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제3회 추경	비고
세입·세출예산	있음	있음	있음	있음	필수
계속비	-	-	-	-	필수
명시이월	있음(전년도)	-	-	-	필수
채무부담행위	-	-	-	-	필수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를 총칭한다.(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li> <li>-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 제40조 제2항)</li> <li>- 2024년도 명시이월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총칙에 규정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함</li> </ul>				

## □ 문제점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예산의 이월) 제1항에 의하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40조(예산의 내용) 제1항에서는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를 총칭함.  
제2항에서는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최종 예산총칙에 명시이월을 규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는 것임.
- 함평군은 매년 당해연도 예산총칙에는 명시이월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있으며, 당해연도 명시이월 의결사항을 다음연도 본예산 예산총칙에 규정하고 있는 실정임.

## 나. 개선 및 권고사항

-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최종 예산총칙에 명시이월을 규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는 것임.
- 따라서, 함평군에서는 2024회계연도에 명시이월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2024년도 최종 추경예산 예산총칙에 이를 규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운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13.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의 개별(個別) 특별회계 운영 필요(맑은물사업소)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함평군의 2024회계연도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은 맑은물 사업소에서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맑은물사업소의 일반회계 예산집행율은 73.37%이며,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집행율은 88.67%임.

#### < 2024년도 상·하수도 사업 운영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	예산현액	집행	집행률	근거
일반회계	사업소관리	77	60	77.92%	지방자치법 제141조
	상수도시설 및 식수관리	7,203	4,091	56.80%	
	하수도 관리	51,600	37,411	72.50%	
	행정운영관리	89	83	93.26%	
	재무활동	3,780	3,452	91.32%	
	소 계	67,503	49,524	<b>73.37%</b>	
상수도 특별회계	상수도시설 및 식수관리	6,381	5,658	<b>88.67%</b>	함평군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

- 함평군 상수도사업은 2024회계연도의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시설 및 식수관리로 7,203백만원 예산현액 중 4,091백만원을 집행하고 있으며,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상수도시설 및 식수관리로 6,381백만원 예산현액 중 5,658백만원을 집행하고 있음.
- 상수도사업중 일반회계의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7,203백만원은 상수도시설 관련 사업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 「함평군 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하면 동 상수도특별회계는 수도사용료 그 밖의 수도비에 속하는 수입과 보조금으로서 세출에 충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4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 6,381백만원은 주로 상수도사업의 유지

관리 등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 함평군 2024년도 하수도사업은 일반회계에서 51,600백만원 예산현액 중에서 37,411백만원을 하수도 관련 시설사업과 운영사업으로 집행하고 있음.

#### □ 문제점

- 함평군 상수도사업은 이와 같이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로 2원화로 운영되고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는 것임.
- 「함평군 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에서는 그 설치목적은 수도비의 회계를 특별회계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하고 있는 바, 동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은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즉, 동 조례의 설치목적은 개정하여 상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상수도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사업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여 일반회계의 상수도 사업을 동 특별회계로 이관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함평군의 하수도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상수도사업과의 형평성 및 하수도사업의 규모 등으로 보아 개별 특별회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나. 개선 및 권고사항

- 함평군 상수도사업은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로 2원화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상수도특별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상수도 업무 관리가 가능할 것이며, 향후 1일 수돗물 생산능력이 1만톤이상(2024년도 기준 1일 6,070톤 생산)으로 증가할 경우에 이를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는 데에도 기여를 하게 될 것임
- 함평군 하수도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2024년도의 경우에 하수도관련 예산현액이 51,600백만원에 이르는 등 규모도 방대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개별 특별회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14. 정책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을 제고방안을 수립하도록 함(해당부서)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함평군은 2024년도의 비전 “새로운 도약과 희망찬 함평” 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 와 “성과보고서” 에 전략목표(21개) - 정책사업목표 (86개)” 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음.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7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음.
- 2024회계연도 정책사업 목표달성 현황을 보면 초과달성 10개, 달성 120개로 전체 성과목표 달성율은 74.29%로서 저조한 실정임.

#### <2024년도 정책사업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구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 (A)	초과 달성(B)	달성(C)	미달성	달성률 (B+C)/A
계	21	86	175	10	120	45	74.29%
기획예산실	1	2	6	2	4	0	100.00%
관광정책실	1	4	13	1	9	3	76.92%
농업정책실	1	6	12	0	3	9	25.00%
총무과	1	3	6	0	6	0	100.00%
민원봉사과	1	3	8	0	8	0	100.00%
재무과	1	3	9	0	9	0	100.00%
인구경제과	1	5	9	0	5	4	55.56%
지역개발과	1	5	5	1	2	2	60.00%
문화체육과	1	4	4	0	2	2	50.00%
농어촌공동체과	1	5	5	0	3	2	60.00%
환경관리과	1	5	8	3	4	1	87.50%
주민복지과	1	7	17	1	13	3	82.35%
가족행복과	1	4	7	0	3	4	42.86%
축산과	1	4	5	0	5	0	100.00%
안전관리과	1	4	7	0	6	1	85.71%
건설교통과	1	5	9	0	2	7	22.22%
산림공원과	1	4	8	0	6	2	75.00%

보건소	1	5	11	1	8	2	81.82%
농업기술센터	1	3	13	1	12	0	100.0%
맑은물사업소	1	4	10	0	7	3	70.00%
의회사무과	1	1	3	0	3	0	100.00%

<전년대비 성과지표 달성 비교>

(단위 : 개)

연도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달성률			평균이상 달성부서
	지표수 (A)	초과 달성수 (B)	달성수 (C)	미달성수 (D)	초과달성률 (B/A)	달성률 ((B+C)/A)	미달성률 (D)/A)	
2024	175	10	120	45	5.71%	<b>74.29%</b>	25.71%	12
2023	170	15	108	47	8.82%	<b>72.35%</b>	27.65%	11

- 전년 대비 2024년 성과지표 목표달성률이 1.94%p 증가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성과지표 초과 달성률이 소폭 감소( $\Delta 3.11\%$ p)하였고, 성과지표 미달성률이 소폭 감소( $\Delta 1.94\%$ p)하였음.

□ 문제점

- 전년 대비 성과지표 목표달성률이 1.94%p 증가하였으나, 성과지표 목표달성 결과를 보면 부서별로 최소 22.22%에서 최대 100%까지 분포하고 있음. 이는 계획수립은 했으나 실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계획수립 시 지표설정이 부적절했거나 지표설정이 적정하더라도 목표를 너무 높게 혹은 너무 낮게 설정했다고 보여짐.

나. 개선 및 권고사항

- 성과지표 목표달성률이 낮은 사업단위는 향후 지표를 설정할 때 달성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 목표달성을 위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함.
- 한편, 성과지표 목표달성률이 높은 사업단위는 향후 지표를 설정할 때 달성 가능성 뿐만아니라 군민의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좀 더 강도 높은 지표설정이 필요함.

## 15. 기금관리의 운용혁신이 필요(해당부서, 총괄-기획예산실)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2024회계연도 기금 운용현황을 보면 전년도말 조성액과 2024년도에 조성된 금액을 합한 43,226백만원중에 2024년도 당해연도에 사용한 18,458백만원의 사용비율은 42.70%로서 기금의 사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 <2024년도 기금 당해연도 사용액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 당해연도 조성액 (A)	당해연도 사용액(B)	사용비율 (B/A)
합 계	43,226	18,458	42.70%
농산물안정기금	4,129	-	0.00%
고향사랑기금	387	30	7.75%
인재양성기금	10,538	694	6.59%
투자유치진흥기금	2,054	100	4.87%
옥외광고발전기금	491	314	63.95%
환경보전기금	939	621	66.13%
사회복지기금	1,625	7	0.43%
재난관리기금	1,612	440	27.30%
식품진흥기금	117	-	0.00%
통합안정화기금(통합계정)	2,909	26	0.89%
통합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18,425	16,226	88.07%

#### □ 문제점

- 2024회계연도 기금의 운용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사용실적은 42.70%이나 회계간 및 기금간 여유재원을 활용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기타 기금의 사용실적을 보면 농산물안정기금의 경우에는 0.00%, 식품진흥기금 0.00%, 사회복지기금 0.43%, 투자유치진흥기금 4.87%, 인재양성기금 6.59%, 재난관리기금 27.30%로서 사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 이러한 기금간 사용실적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현재 각 기금별로 산재해 있는 기금관리 운영위원회를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이 부재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임.

## 나. 개선 및 권고사항

-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운용혁신이 필요함.
- 또한, 융자성기금 금리 결정전 시중은행 대출금리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즉, 자치단체에서 금융기관과 대출금리 약정 전에 한국은행 통계자료 등을 활용, 시중 대출금리 현황 파악 후 약정 체결이 필요할 것임.
- 현재 각 기금별로 산재해 있는 기금관리 운영위원회를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Ⅲ. 개선 및 향상된 사항

#### 1. 세출예산 이월액 최소화 및 순세계 잉여금 감소를 위한 진력 (기획예산실·전부서)

##### ■ 전년대비 세출 예산 이월액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다음연도이월액 (명시+사고)	순세계잉여 금	결산상잉여 금	반납액
2024	712,242,210	96,153,681	43,710,080	146,223,487	6,359,725
2023	717,434,183	102,038,056	60,998,803	170,487,544	6,577,901
증△감	△5,191,973	△5,884,375	△17,288,723	△24,264,057	△218,176

○ 2024년도 이월액(명시·사고)은 2023년도 대비 5,884,275천원의 이월액 감축과, 순세계잉여금 2023년도 대비 17,288,723천원의 잉여금 감축.

○ 이는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예산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부서간 상호 협력으로 이월액 최소화 노력으로 지방재정 건정성 확보에 진력하였음.

##### ◆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

- 이월사업에 대한 집행 최대화 대책 보고회 : 2024. 1.
- 이월예산 사업에 대한 향후 구체적 집행계획 파악 : 2024. 7.
-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 조정 : 2024. 8.

##### ◆ 순세계잉여금 감소를 위한 노력

- 예산 낭비요인 사전 차단을 위한 집행 상황 파악 : 2024. 7.
- 3/4분기 소비투자 목표액 배분 및 집행 전망 파악 : 2024. 8.
- 4/4분기 소비투자 목표액 배분 및 집행 전망 파악 : 2024. 10.
- 부서별 미집행사유 파악 및 집행 독려 : 2024. 11. ~ 12.

## 2. 건강드림 건강서비스 확대, 행복버스 운영(보건소)

- 2011년도부터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통합의료서비스 9개읍·면 경로당 136개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담아내어, 발 마사지와 치유프로그램(손가락 난타, 노래, 체조)을 추가 확대 운영하고 있음.

### ○ 운영현황

구분	사업비 현황(단위 : 백만원)			운영현황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2024년	123	112	91%	180회 196개소 5,660명 (발마사기 2248, 치유 658)
2023년	413	355	85%	155회 167개소 5,981명 (치유 161)

### ○ 주요성과

- 의료취약지역에 이동진료차량 2대 이용한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읍·면 순회진료, 건강 상담 및 교육을 수행하여 의료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함.
- 2023년 신규 사업으로 치유프로그램(노래교실, 체조교실, 손가락난타)을 시작, 2024년 확대 운영하여 운동시설과 여가시설이 부족한 취약지에 보급하여 활력 넘치고 분위기 좋은 경로당을 조성함.
- 2023년과 2025년에 걸쳐 봉사활동 희망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총 2기 16회(1기 8회)의 발 건강관리 교육 실시로 28명이 수료하여 발 관리 봉사자로 등록, 건강드림 행복버스 사업에서 마을을 순회하며 어르신들께 자가 발 관리법을 알리고 발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함에 최고의 만족도를 높여줌.
- 이처럼 함평군보건소는 '건강드림 행복버스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023년 413백만원, 2024년 123백만원 예산을 편성 최근 2년간 취약지 경로당 363개소를 335회 11,641명에게 행복전도사 역할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함.

## IV. 2023회계연도 통합 결산 개선 및 권고 처리사항

항 목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향후 추진
<p>1. 순세계잉여금 지속적 관리요망 (기획예산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출예산은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계획성 있는 재정 운영이 이루어 져야 하며, 「지방재정법」제47조의 2에서는 목적 외 사용을 금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음</li> <li>○ 이러한 원칙적인 운영으로 인한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용과 변경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부족 예산은 추가 경정 예산 편성 후 확보하여야 하며 가급적 그 비중을 필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회계연도 통합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에 따른 계획적인 예산편성·집행 요청 ※ 기획예산실-7138(2024.5.2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 12월 말에 정리추경 예산편성 이후에 이례적으로 지방교부세가 추가교부되어 초과 세입(순세계잉여금)이 급격히 증가하여 관련 조치사항은 없으나 향후 세입추계 담당부서와 긴밀한 업무협조로 초과 세입 발생 최소화</li> <li>○ 신속집행 보고회 등을 통해 집행을 독려하고 추경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한 적극적 세출 구조 조정을 독려</li> </ul>

항 목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향후 추진
<p>2. 일반회계 전용예산 최소화 (기획예산실 해당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성립 후 불가피한 경우에 예산전용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있음</li>   <li>○ 이러한 원칙적인 운영으로 인한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전용과 변경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부족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확보하여야 하며 가급적 그 비중을 필요 범위 내에서 최소화 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회계연도 통합결산 검사 개선 및 권고에 따른 전용예산 최소화 협조 공문 시달</li> <li>※ 기획예산실-7138(2024.5.27.)</li> <li>※ 관광정책실-9400(2024.5.27.)</li> <li>※ 농업정책실-13714(2024.5.24.)</li> <li>※ 총무과-12088(2024.5.20.)</li> <li>※ 민원봉사과-30904(2024.5.22.)</li> <li>※ 문화체육과-9279(2024.5.22.)</li> <li>※ 환경관리과-21504(2024.5.22.)</li> <li>※ 축산과-14794(2024.5.27.)</li> <li>※ 안전관리과-11495(2024.5.28.)</li> <li>※ 건설교통과-60114(2024.5.27.)</li> <li>※ 산림공원과-10913(2024.5.22.)</li> <li>※ 보건소-25852(2024.5.2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후, 예산편성 및 사업 추진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사전예측을 통해 계획적인 예산 성립 · 지출로 목적에 맞는 예산운영을 추진하겠음</li>   <li>○ 긴급을 요하지 않거나 사전 예측 가능성이 높은 사업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집행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를 부서 직원들에게 지속 독려하여 일반회계 전용 예산을 최소화 하겠음</li>   <li>○ 예산전용 운영방법 교육을 실시하겠음 -예산전용의 취지 및 관련법령 안내 : 2024. 9월한</li> </ul>

항 목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향후 추진
3. 예산편성 부적정 (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추진을 하지 않아 예산 미집행 사례가 발생함과 동시에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고있음</li> <li>○ 매년 집행잔액이 많아져 가고 있으니 예산편성시 사업에 대한 세밀한 계획과 검토를 철저히 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과다예산 확보를 지양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 편성 부적정된 부서 자체점검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경제과-23583(2024.5.23.)</li> <li>※ 지역개발과-8471(2024.5.23.)</li> <li>※ 축산과-14794(2024.5.27.)</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편성 시 사업비의 당해연도내 집행 여부 및 사업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집행잔액(불용액) 발생 최소화 하겠음 ⇒ 예산편성 운영기준 교육 실시 예정 : 2024. 9월 한</li> <li>○ 사업추진 불가, 문제성 사업은 추경예산에 삭감 후 연내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조정하는 등 사업예산 집행 철저히 하겠음</li> </ul>

항 목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향후 추진
<p>4. 세입예산 편성소홀 (기획예산실 재무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수납액이 예산현액을 초과하는 현상은 세입예산의 과소설정으로 세출예산이 축소 편성 될 수 밖에 없음</li> <li>○ 세입의 단순한 집계관리가 아닌 다양한 세수요인을 반영한 세수실적에 따른 적극적 추경예산 반영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후 세입 처리 과정에서 세입추계 부서와 예산편성 부서의 긴밀한 상호협의 및 업무협조 하겠음</li> <li>※ 기획예산실-7138(2024.5.27.)</li> <li>※ 재무과-22816(2024.5.2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입예산 편성에 대한 교육 실시 예정</li> <li>- 세입예산 과목 등 편성 관련 안내를 통해 적극적인 세입 예산편성 독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2024년 9월한</p>

항 목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향후 추진
<p>5. 기금운용 사용 실적 저조 (해당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개 기금을 관련조례에 따라 운용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운용실적이 미비한 실정으로 특히 농산물안정기금, 식품진흥기금은 집행실적이 전무함</li> <li>○ 예산편성시 기금별 조례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철저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회계연도 통합결산검사 개선 및 권에 따른 기금의 효율적 운영 요청 공문 송부 ※기획예산실-7140(2024.5.27.)</li> <li>○ 식품진흥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진흥기금 운용 권고사항에 따라 향후 기금 고갈을 대비하기 위하여 기금 1억원 미만 잔액을 예치하여 운용실적이 미비했음 ※ 보건소-25852(2024.5.24.)</li> </ul> </li> <li>○ 농산물안정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이 최저 가격 이하로 떨어질 시 사용되며, 집행사유 발생 시 지출하겠음 ※ 농업정책실-13714(2024.5.24.)</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금총괄부서(기획예산실)에서 기금운용 전반적 사항을 관리하도록 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용실적이 미비한 기금 검토,</li> <li>- 유사·중복된 기금 정비</li> <li>- 기금 존속기한 관리</li> <li>- 기금의 수입·지출 업무시 이호조 시스템 사용처리 의무교육 등</li> </ul> </li> <li>○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적기에 사업추진 및 적극 집행하도록 하겠음</li> <li>○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후 조례 개정하도록 하겠음</li> </ul>

항 목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향후 추진
6. 이월사업비 집행 철저(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100% 집행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예산집행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은 당초 효율적이지 못한 편성과 부실한 예산심의의 결과로 보여짐</li> <li>○ 이월요구시 이월의 필요성 및 이월시 실제 소요 예상재원을 검토하여 예산의 100%가 미집행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월사업비 불용처리 부서 자체점검 완료</li> <li>※ 농업정책실-13714(2024.5.24.)</li> <li>※ 지역개발과-8471(2024.5.23.)</li> <li>※ 농어촌공동체과-15289(2024.5.24.)</li> <li>※ 안전관리과- 11495(2024.5.28.)</li> <li>※ 건설교통과-60114(2024.5.27.)</li> <li>※ 맑은물사업소-5287(2024.5.2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집행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예산을 수립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음</li> </ul>

항 목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향후 추진
<p>7. 예산편성 후 집행액 0원인 사업 추진 철저(해당부서)</p>	<p>○ 사전예측과 계획을 통해 예산 삭감조치 및 세출예산 중 시설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지출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p>	<p>○ 예산 미집행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 예산운영 관리를 적극 추진하겠음</p> <p>○ 이월이 불가능한 국고금은 반납 조치</p> <p>※ 농어촌공동체과-15289(2024.5.24.)</p> <p>※ 축산과-14794(2024.5.27.)</p> <p>※ 안전관리과-11495(2024.5.28.)</p> <p>※ 건설교통과-60114(2024.5.27.)</p> <p>※ 보건소-2582(2024.5.24.)</p>	<p>○ 예산 편성 후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삭감조치하고 필요시 이월조치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음</p> <p>○ 예산편성시 당해 회계연도에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불가피할 경우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겠음</p>

항 목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향후 추진
<p>8.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미흡 (기획예산실, 재무과)</p>	<p>○ 순세계잉여금 과다, 이월액 과다, 세입세출외현금 미처리 등 매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지적되고 있어 시정이 요구됨</p>	<p>○ 2023회계연도 통합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에 따른 계획적인 예산·편성 집행 요청 ※ 기획예산실-7138(2024.5.27.) ※ 재무과-22921(2024.5.28.)</p>	<p>○ 신속집행 보고회 등을 통해 부서별 예산사업 현황 및 추진 상황을 연중 점검하여 사업적기 추진을 독려하고 이월액 및 집행잔액 최소화 하겠음</p> <p>○ 추경시 이월·불용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세출구조조정 독려 하겠음</p> <p>○ 세입세출외현금 관련법령 숙지 및 업무 연찬을 통해 집행 잔액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음</p>